

의안번호	제 58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성원 의원
발의연월일	2020년 11월 17일

**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  
(박성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8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11월 17일  
발 의 자 : 박성원 의원  
찬 성 자 : 최경천, 김국기, 김영주,  
이수완, 임동현, 정상교 의원

### 1. 제안 이유

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예산 지원 사항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“교육생태계” 등 용어 정의를 추가함(안 제2조)
- 나. 예산지원 방식을 구체화함(안 제6조)
- 다.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-94호  
(2020. 11. 11. ~ 2020. 11. 15.)
- 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교육생태계”란 가정, 학교, 지역사회 등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 및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말한다.
5. “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”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(지원)청과 자치단체, 지역사회 등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교육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지원센터설치)”를 “(지원센터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”를 “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”로 하

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·보급
2.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인적·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
3. 마을교육공동체 조직·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
4. 마을주민 교육,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
5.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발굴·전파
6.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·분석 및 평가
7.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
8.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③ 지원센터는 교육(지원)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설치·운영하거나,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제6조(지원)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“교육생태계”란 가정, 학교, 지역사회 등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 및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말한다.</u></p> <p>5. <u>“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”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(지원)청과 자치단체, 지역사회 등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교육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.</u></p> <p>제6조(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</u> 및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-----</p>

② (생략)

제7조(지원센터설치)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원센터설치 등) ① -----  
----- 광역시  
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-----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·보급
2.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인적·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
3. 마을교육공동체 조직·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
4. 마을주민 교육,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
5.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발굴·전파
6.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·분석 및 평가
7.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
8.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<신 설>

제11조(포상) 교육감은 마을교육  
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  
이 탁월한 사람, 학교, 기관 또  
는 단체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 
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  
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③ 지원센터는 교육(지원)청이  
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설치  
· 운영하거나, 마을교육공동체  
활성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  
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  
에 위탁할 수 있다.

<삭 제>



# 관 계 법 령

## □ 교육기본법

[시행 2017. 6. 22.] [법률 제14601호, 2017. 3. 21., 일부개정]

제10조(사회교육)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.

② 사회교육의 이수(履修)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.

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·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## □ 협동조합 기본법

[시행 2017. 8. 9.] [법률 제14845호, 2017. 8. 9., 일부개정]

제10조(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)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,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,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·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. 21.>

## □ 평생교육법

[시행 2017. 5. 30.] [법률 제14160호, 2016. 5. 29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<신설 2016. 5. 29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  
<개정 2016. 5. 29.>

제17조(지도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29조(학교의 평생교육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·시행하도록 하며,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·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·도서관·체육관,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

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)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·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제42조의2(지도·감독)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인가·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## □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. 7. 12.] [충청북도조례 제4288호, 2019. 7. 12., 일부개정]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위탁기관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
 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 4.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- ② 위탁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

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위탁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7. 12.>

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9. 7. 12.>

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9. 7. 12.>

1.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,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
2.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
3. 청소, 경비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

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위탁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

제9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

2.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, 장비 및 기술 보유 정도
3.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
4. 수탁기관의 비용 절감 능력
5.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

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,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자는 위탁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계약체결)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 내용을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·주소
2. 민간위탁의 목적
3.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
4. 민간위탁 기간
5.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
6.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7.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
8. 계약의 해지
9.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
10.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제3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제17조의 종합성과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제11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제12조(운영지원)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지휘·감독)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③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4조(사무편람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절차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조(이의신청)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위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붙여 10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보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위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재결을 하고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6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,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7조(종합성과평가) ① 위탁기관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,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심사 시 반영하고, 충청북도교육청 및 해당 위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제3자 위탁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 <제목개정 2019. 7. 12.>

##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학교, 마을, 지역사회,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활동(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컨설팅 및 모니터링, 주민교육, 네트워크 구축·운영 등)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소요경비

### 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지원)
- 안 제8조(지원센터설치)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2021년 비용 소요 예상액

나. 추계결과: 2021년부터 향후 5년간(2021~2025년) 700,000천원

※ 2021년(1차년도): 100,000천원

2022년(2차년도): 150,000천원

2023년(3차년도): 150,000천원

2024년(4차년도): 150,000천원

2025년(5차년도): 15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: 자체재원

※ 추후 지자체 대응투자 확보 방안 마련

### 5. 연도별 비용 추계표: 붙임



## 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4년)	계	
세 입	0	0	0	0	0	0	
세 출	10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00,000	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국고보조금						
	보통교부금	10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00,000	
	특별교부금	(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계획에 의함)					0
	기초자치단체 전입금						0
자체 수입	소 계					0	
	자체수입					0	
						0	
						0	
지방채						0	
기 금						0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0	